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11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김 윤 · 조계원 · 강경숙
서미화 · 백혜련 · 채현일
이주희 · 최혁진 · 김우영
조승래 · 박은정 · 전현희
이정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기 전에 제20조의3에 따른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약국의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제20조의3에 따른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20조제7항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약국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약국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약사회의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약국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기 전에 제20조의3에 따른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1. 약국의 전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u> <u>2. 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u> <u>3.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u> <u>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제20조의3에 따른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20조제7항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u>
<u><신 설></u>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약국 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약국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약사회의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약국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